

위조지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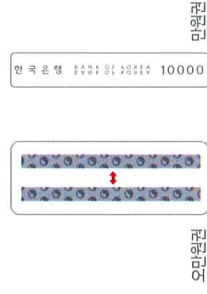
위조방지장치 쉽게 확인하세요!



1 신사임당과 세종대왕의 초상



2 오만원권의 움직이는 태극무늬와 만원권의 숨은 은선



3 3가지 무늬가 번갈아 보이는 홀로그램



화폐도안

화폐도안 이용 기준 알고 계신가요?

화폐도안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화폐도안 불법 도용사례

화폐도안에 광고 문구를 넣은 쿠폰이나 진단지를 제작·배포하여 일반인이 화폐로 오인하도록 하는 경우



화폐도안을 사용한 방식, 속옷, 수첩, 저금통 등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판매하는 경우



인터넷에 화폐도안을 변형하거나, 초상을 특정인물로 변경한 사진을 올려 화폐의 존엄성과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화폐도안 이용 기준



화폐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가진 한국은행이 정한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 기준 위반 시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이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폐 모조품

화폐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

- 교육, 연구, 보도, 재판 목적인 경우에 사용 가능
-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 또는 200% 이상

인쇄 상화

서적·신문·잡지·광고 등에서
내용 또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함께 그려 넣는 그림

- 삽화는 반드시 단면이어야 함
-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
- 도안 일부의 삽화인 경우도 동일

전자적 삽화

인쇄삽화의 의미와 동일하나
사용 매체가 전자적인 자료

- 복제물 원본의 해상도는 72dpi 이하
- 화폐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 'SPECIMEN' 또는 '모기'를 화폐도안 초상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표시